

핀테크 활성화 방안 연구: 미국, 중국, 한국의 규제 현황 중심으로

김상원¹, 임석진^{2*}

¹성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²성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Study on the FinTech activation plan: The U.S., China, and Korea's Regulations

Sang-Won Kim¹, Seokjin Im^{2*}

¹Student,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Sungkyul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Sungkyul University

요약 IT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인 핀테크는 미국, 중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규모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하나의 예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규제에 비해 더욱 완화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의 negative 규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에 있던 금융권의 규제들을 핀테크 산업에 적용하지 않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삼성페이'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여 활성화되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각종 시장의 비우호적이고 비개방적인 규제 때문에 핀테크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본 논문은 핀테크 선진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현황을 파악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핀테크 관련 규제를 살펴본 후에,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하는 등 금융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 핀테크, 금융, 핀테크 산업의 성장, 3국의 핀테크 규제 및 현황, 한국의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

Abstract Fintech, a new form of financial industry that converges IT, is developing rapid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The U.S. and China lowered barriers to entry through deregulation to develop and expand the fintech industry, and, for example, encouraged startup companies to incorporate various ideas through negative regulations that are more relaxed or do not apply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U.S. and China did not apply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to the fintech industry,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fintech startups could grow more easily. Currently, in Korea, fintech technologies such as 'Samsung Pay', 'Toss' and 'Kakao Pay' have been developed and are being activated, and also their scale is expanding. Although various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and regulated for the development of Fintech, Fintech's growth rate is slow due to unfriendly and unopened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various markets.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fintech, focusing on advanced fintech and Korea, and examines fintech-related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industry. We propose a more flexible way of easing excessive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post-regulation.

Key Words : Fin-tech, Finance, FinTech Industry Growth, FinTech Regulations and Status in Three Countries, Sol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 Korea

*Corresponding Author : Seokjin Im(imseokjin@gmail.com)

Received July 20, 2021

Accepted August 20, 2021

Revised August 13,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1. 서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으로서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도모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기초를 이루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금융, 보안, 인공지능과 같은 IT 기술과 융합하고 병행하며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며 성장하였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T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개척하고 있다[1]. 핀테크의 보안 분야에서는 홍채인식과 지문인식 등을 적용하여 보안성은 높이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확대하였다. 특히 간편결제는 사용자 편리성을 더욱 확대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IT 기반의 결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사용자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핀테크는 송금, 자산관리, 대출, 예금, 결제 등 다방면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첨단 IT 모바일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Fig. 1은 핀테크의 다양한 분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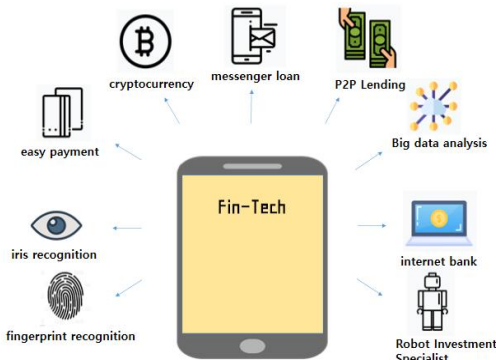


Fig. 1. Various technical fields of fintech

본 논문은 미국, 중국, 한국 3개국의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규제를 고찰하고 한국의 핀테크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각종 규제에 대해 논하고 3장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주요 선진국가의 핀테크 산업

2.1 미국의 핀테크 산업

‘핀테크’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르며, 산업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다[2].

미국 내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분야는 결제 서비스 분야이며,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 월렛, 애플페이, 아마존 결제 서비스가 있다. 구글 월렛은 구글에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결제 서비스이며, 애플페이는 애플에서 애플워치와 아이폰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와이파이 기능의 강화 및 4G 네트워크의 기능과 지문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센서가 내장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애플페이를 지원하고 있다. 애플페이의 가맹점 수는 구글보다 많으며, 애플페이의 경우 아이폰을 매개로만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3]. 아마존은 원클릭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개인 간 송금 또한 가능한 핀테크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핀테크 산업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고, 그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Fig. 2는 미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에 대한 그래프로서,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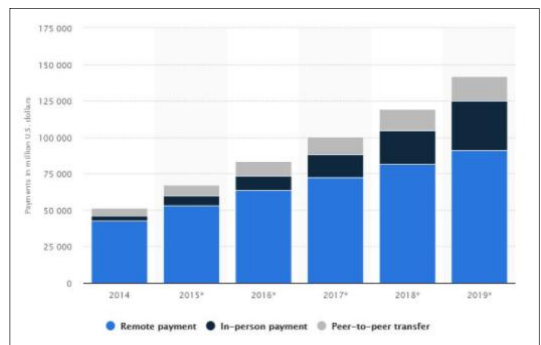


Fig. 2. The scale of mobile payments in the US FinTech industry

핀테크 강대국인 미국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 제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핀테크 사업자에 대해 직접 규율 관리하는 연방 법규로는 전자자금이체법, 공정신용기회법, 공정예금법, 증권법, 상품거래법 등이 있다. Table 1은 미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를 보인다[4].

Table 1. Fintech-related regulations in the US

Field	Regulation
bank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ue to the absence of special laws that apply only to Internet-only banks, the same level of authorization and supervision as general national and state law banks is applied. 2. As Internet-only banks are not defined separately from commercial bank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Monetary Control Office (OCC) and state supervisory authorities perform authorization,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the same way as commercial banks. 3. The supervisory authority conducts authorization,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Internet-only bank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Internet-only banks such as IT-related risks.
non-bank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ost states impose registration obligations on money service businesses that engage in remittance and check settlement. 2. If a fintech business intends to handle personal microcredit and mortgage loans, it must be approved, supervised and inspected by the state authorities. 3. Fintech operators can handle loans and receipts with the approval of the industrial loan company, which is a deposit handling institution affiliated with the FDIC.
capital market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ccording to the JOBS Act, crowdfunding platforms must be registered with the SEC and FINRA and comply with various investor protection regulations. 2. Must be registered as an investment advisory firm (SEC or state) or broker (FINRA) and must comply with various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to protect investors 3. Virtual currency regulation methods are different for each state, such as applying the remittance law and granting separate licenses, and some states do not regulate virtual currency.

미국은 핀테크 기반의 인터넷 은행을 일반은행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통화 감독청 및 주 감독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또한 P2P 대출 업자가 개인 대상의 소액신용 대출 또는 모기지대출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도 당국의 인가와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들이 있다. 이러한 인허가, 영업규제 등과 관련한 핀테크 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및 규제준수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핀테크 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핀테크 관련 불균형한 성장도 전체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중국의 핀테크 산업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핀테크 분야에서 기술과 규모에서 세계적 규모를 자랑한다. Fig.

3의 세계 주요국가의 핀테크 거래 규모를 보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핀테크 거래 규모가 커서 중국의 핀테크 발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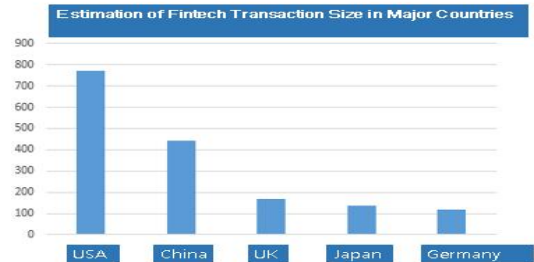


Fig. 3. FinTech transaction volume in major countries in 2016 (Unit: USD Billion), Source: KOTRA

중국 내 핀테크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있다. 알리페이는 개인 간의 송금, 세금 납부, 공공요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가게에서의 결제, 여행, 자금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알리페이는 연이율이 5%대로 이자율이 다른 금융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1위안부터 원금 보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사람들이 알리페이를 많이 사용한다. 위챗페이에 위챗은 중국 내에서 압도적인 사용량을 보유 중인 SNS이다. 위챗페이는 다수의 은행 계좌와 연동 가능하며, 연동된 계정들을 통한 청구서 결제, 전자결제, 스마트폰 간 QR코드 스캔을 통한 개인 간의 결제, 세벳돈 전송,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결제가 가능하다.

중국 핀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인 디지털 위안화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 중국의 중앙은행이 지폐, 동전의 전통적인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려는 것으로, 디지털 화폐는 실물이 없고 디지털 부호에 의해 돈이 생성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의 MO 통화(유통 중인 지폐와 동전) 공급을 CBDC로 대체 할 계획이다[5].

중국의 핀테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완화된 규제들에 기인하며 Table 2는 중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이다[6].

Table 2. Fintech-related regulations in China

Field	Regulation
flexible Regulatory method	1.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 a 'post-regulation' method rather than 'pre-regulation'. A policy that accepts no regulations when the fintech industry emerges and applies regulations when problems arise. 2. Proceed with open regulation in a 'negative way' where anything is possible except what is prohibited by law 3. China applies deregulation for new fintech industries to certain regions or pilot companies, so that companies can operate more competitively
market entry limit minimization	1. On the premise of a single industry, there is no partition regulation that prevents exchanges with other businesses. It is easy to build an integrated business model because there is no partition by industry 2. There are no provisions in China to regulate the management and ownership of banking business. 3. Inducing innovation by breaking down regulations so that new companies can enter the market in areas dominated by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은 반면 핀테크 산업에는 더욱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이 자리잡혀 있다.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이 중국의 핀테크 산업을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고, 상위권에 속하게 만든 요인이다. 반면에 중국의 핀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로 데이터보호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데이터 유출관리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안전 사고가 빈발해 데이터 보안이 시급하다. 둘째로 공급망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중국의 금융업계에서는 금융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공급사슬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 금융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로 핀테크에 관한 관리·감독 법안이 미비하다. 새로운 업태는 기존 금융통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계산 및 감독관리 체계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으며 업무 패러다임의 혁신으로 전통적인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혼업경영의 판도가 전혀 없이 복잡해지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2.3 한국의 핀테크 산업

한국의 IT 기술과 뛰어난 인터넷 보급률과 같은 환경은 전 세계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이 최상위 수준이지만 한국의 핀테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 2019년 핀테크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인 '토스'와 '모

인' 두 곳만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다. Fig. 4는 국내 핀테크 업체의 현황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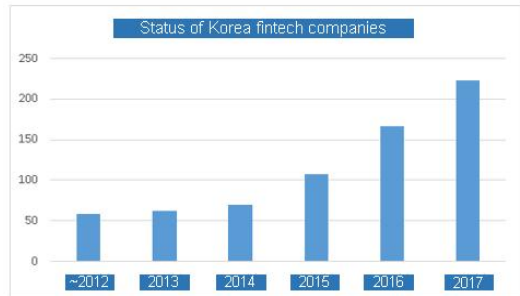


Fig. 4. Status of Korea FinTech companies

해가 지날수록 국내 핀테크 업체는 점점 늘어나지만, 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 속도가 월등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AI 등 IT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는 금융 산업의 중요한 성장기술이지만 각종 규제들이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Table 3은 한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이다[7-9].

Table 3. Fintech-related regulations in Korea

Field	Regulation
flexible Regulatory method	1. Regulations related to fintech in Korea are 'pre-regulations'. When technology appears in the financial market, regulations are not applied, and rather than supplemented by applying regulations later, it is a method of establishing a proactive management system for financial services through various deliberation in advance. 2. In the case of Korea's fintech industry, things that are permitted by regulation or law are carried out normally, and everything else is not allowed. Most of the financial regulations are still applied, so there are difficulties in introducing new technologies or new services.
market entry limit minimization	1. Non-bank payment and settlement companies in Korea are subject to partitioning regulations that subdivide and separate the business areas of payment and settlement. In addition, sinc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classifies industries, the entry requirements for each are different. 2. Korea stipulates that asset management products can only be purchased and sol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have acquired investment-related qualifications, such as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and investment trading business.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핀테크 강대국에 비해 성장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적 많이 부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핀테크의 경우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을 바탕으로 중국 핀테크 산업 발전

에 기여한 것을 통해 한국의 핀테크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 국내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제안

핀테크 강국인 미국, 중국, 영국은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비교적 느리며 이것은 다음의 세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로 P2P대출 서비스의 규제 중 유사수신행위 규제이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은행법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안 받거나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P2P 관련 금융거래는 핀테크에서 여러 분야로 많이 사용되는 거래이다.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의 예가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P2P대출 서비스 관련해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P2P 관련된 핀테크 산업이 힘들다. 현재 한국에서 핀테크 관련 우세한 기업인 ‘토스’에서는 최근 P2P 대출 회사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10]. P2P 상품의 연체 및 손실 위험은 높아져가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라고 한다)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 시행 등 P2P 상품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했을 때의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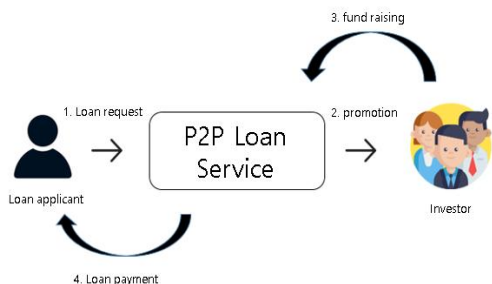


Fig. 5. Examples of violations of the ‘유사수신행위법’

P2P대출 서비스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대출이 필요한 신청인이 P2P대출을 신청한다. 두 번째로 P2P대출 서비스(대출신청인과 투자자 사이)는 받은 요청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여 대출요청의뢰를

홍보한다. 세 번째로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액을 P2P대출 서비스가 받는다. 마지막으로 받은 금액을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얼핏 보면 Peer-to-Peer의 거래에서 중간에 거래하기 쉽게 연결해주는 업체가 하나 있어 보다 거래가 수월해 보인다. 하지만 Fig. 5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간업체인 P2P대출 서비스가 금융위에 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 불법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P2P대출 서비스의 규제 중 대부업법 규제이다. 대부업법이란 고금리를 기반으로 한 사채 시장을 제한하고, 사채업자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 외에도 대부업법 제9조의4를 보면 대부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아 대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또한 P2P 거래에서 대부업자를 미등록하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적용된다.

셋째로 보안성이다. 기존의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였지만 현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토스’에서 고객의 의도로 진행된 것이 아닌 1천만원 가량 결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 보안성이 중요한 핀테크 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을 당할 시에 피해가 상당하다.

이상의 3가지 원인 외에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원인은 한국의 비우호적이고 비개방적인 규제방식 때문이다. 다른 핀테크 강국들을 보면 핀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융권과 자본시장 쪽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권 자체가 본래 보수적인 산업이며, 핀테크에 접목하기에 규제 면에서 많은 제한점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들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현재 미국은 민형사상법과 규율을 제외하면 어떤 것이든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공적자금관리에 대한 특별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규제들이 적용된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당국의 허용 여부를 가늠해야 하고 수개월 동안 인가를 기다려야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 중이다. 자유도를 비교해봤을 때 네거티브 방식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빠른 기술의 발전 속도로 인해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한다면 미국, 중국과 같은 핀테크 강국의 금융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사후규제'로 전환 : 기술이 먼저 금융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각종 심의 등을 통해 규제를 정하는 것이 아닌 기술이 먼저 금융시장에 나오고 이후에 규제를 정하는 사후규제로 바뀌어야 한다. 핀테크 산업 분야로는 간편결제, 클라우드 펀딩, 데이터분석,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법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법 등 수많은 규제와 법이 따른다. 현재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사전적 규제를 담고 있으며 신고, 등록, 인허가 등 여러 가지의 장벽이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어도 현재 한국과 같은 사전적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 환경에서는 트랜스퍼와이즈, 렌딩클럽과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힘들다. 사후규제로 전환 시에 기존의 사전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되는 다양한 기술력의 경쟁을 통한 기술의 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 각종 금융 규제들 완화 : 핀테크 산업 관련된 법으로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법 이외의 수많은 규제와 법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은 포지티브등장하기 전에 수많은 규제와 법을 먼저 적용한 뒤 이후 심사를 통해 기술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방식과 사전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다. 만약 네거티브 방식과 사후규제로 변환 시에 더욱 유연하게 기술이 등장하고 발전되겠지만 금융권의 보수적인 환경 때문에 바뀌기에는 쉽지 않다. 때문에 핀테크 산업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한다면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 사전 규제에서 심사를 진행할 때 완화된 금융규제를 적용하여 보다 기술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방면에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금융 규제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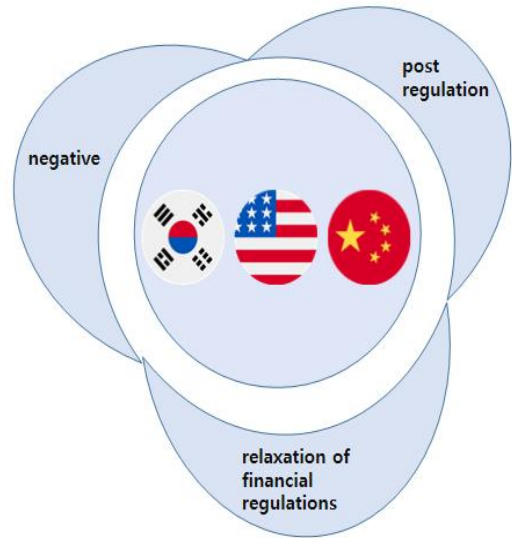


Fig. 6. Direction of Fintech Development in Korea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 4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및 각 나라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핀테크 발전을 위해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포지티브 방식' 이나, '사전규제' 같은 여러 규제들을 '네거티브 방식' 이나 '사후규제'로 바꿈으로써 핀테크 산업에 더욱 큰 발전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과 같은 금융 규제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한다. 개별 법안을 논의와 검토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에 따른 보호 장치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부의 재량권 내에서 미국과 같은 '업종별로 인가와 허가 및 규제 적용 면제', '비조치 의견서' 또는 '한정 인가', '적응 규제', '지정대리인' 등 규제 적용의 예외적인 요소들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21년 7월 21일에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핀테크 및 규제혁신이 진행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적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정부가 규제개선을 승인한 경우 테스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많은 규제에 대한 개선 및 완화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C. Choi, Y. J. Choi, S. J. Park, S. W. Kim & H. J. Son. (2020). Analysis of service area and technical environment of domestic fintech companies.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24(1), 442-443.
- [2] J. S. Park, M. J. Kim & B. I. Hwang. (2016). Fintech development background and major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Society(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33(2), 52-58.
- [3] H. G. Kim. (2019).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Behavior on FinTech Service: Focused on Mobile Payment Service. *National Library of Korea*, 15-18.
- [4] D. H. Kim. (2019).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US fintech-related regulation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5-13.
- [5] Digital Currency Research Team. (2020). Overseas Central Banks' CBDC Promotion Status, *BANK OF KOREA*, 24-25.
- [6] K. Y. Han. (2018). Two Characteristics of China's Deregulation That Driven Alibaba's Success, Keri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ttp://www.keri.org/>
- [7] S. M. Jeon & D. H. Park.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Fintech Regulations and Start-ups: Focusing on the US, China, and Korea Cases. *Venture Startup Research Society*, 15(1), 53.
- [8] M. S. Hong & B. D. Jeong. (2018).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according to the Trend of FinTech Industry in Major Countries. *International e-Business Society*, 19(6), 369-383. DOI : 10.20462/TeBS.2018.12.19.6.369.
- [9] Y. M. Koh. (2019). FinTech Regulatory Sandboxes in Foreign Countries: Focused on UK and Australian Legislative Cases. *Korean Business Law Association*, 30(1), 287-332.
- [10] S. C. Won. (2019). A FinTech in the UK and its Impact on SMEs' Business Environment. *(Incorporated) Korea Payment and Settlement Society*, 11(2), 219-261.

김 상 원(Sang-Won Kim)

[학생회원]



- 2018년 3월~ 현재 : 성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 관심분야 : 프로그래밍, Fintech
- E-Mail : rlatkddnja@naver.com

임 석 진(Seokjin Im)

[정회원]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이학박사)
- 2008년 8월~2010년 7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2014년 4월~ 현재 : 성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 E-Mail : imseokjin@gmail.com